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13. 6. 5.

사회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3년 5월 27일

나. 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다. 회부일자 : 2013년 5월 31일

라. 상정일자 : 제175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(2013년 6월 4일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 설명자 : 복지국장 김찬재)

가. 제안이유

-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소외, 고독감, 노인학대 등 사회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노인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노인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인상담센터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1) 조례의 목적, 명칭, 설치에 관하여 규정(안 제1조, 안 제2조)
- 2) 상담센터의 기능, 인력을 명시(안 제3조, 안 제5조)
- 3) 상담센터의 운영, 수탁자의 의무 규정(안 제8조, 안 제9조)
- 4) 상담센터 운영 등에 따른 지도·감독(안 제10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: 이태선)

- 본 제정조례안은 노인상담센터를 설치·운영함으로써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고령화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자살, 우울증, 학대 등 노인들의 욕구에 맞는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함.
- 주요내용을 보면
노인상담센터의 설치목적과 수행하는 기능, 인력, 자원봉사자 활용, 운영 방법 및 수탁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함.
-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2년에 발표한 ‘2011 노인 실태조사’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 가구형태에서 노인 단독가구가 68.1%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, 자녀와 동거하는 가구는 27.3%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, 또한 노인의 88.5%가 만성질환자로 고혈압 54.8%, 우울증상 29.2%로 조사되어 특히 여성, 고연령, 저소득일수록 우울증상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. 노인의 빈곤율은 76.6%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고 OECD 평균 25%의 세 배에 이르고, 노인 중 11.2%는 자살을 생각해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고 되었음.
- 위와 같은 실태조사 결과를 볼 때 노인과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서비스 연계와 노인문제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지원 등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상담센터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지며, 센터가 노인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. 향후 센터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역자원과의 연계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상담봉사자의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방안이 마련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
- 참고로 우리 구는 2011. 5. 12 서울시 최초로 「영등포구 노인상담 센터」를 개소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, 이와 관련 타 자치단체에 대하여 수범 상담사례 홍보 등 선도적 역할이 필요하고 민간후원금의 확대 발굴 등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검토되어야 할 것임.

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제 210 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연월일 : 2013. 5.
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우리구 어르신에게 각종 상담, 교육, 서비스연계를 제공하여 세대간의 갈등, 가족의 분열, 노인학대, 우울 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하고자 함 .

2. 주요내용

- 가. 노인상담센터 설치 목적 및 명칭 규정 (안 제1~2조)
- 나. 노인상담센터의 기능에 관한 사항 (안 제3조)
- 다. 노인상담센터의 시설 및 인력에 관한 사항 (안 제4조 ~ 제5조)
- 라. 노인상담센터 수행시 필요한 자원봉사운영에 관한 사항 (안 제6조)
- 마. 노인상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(안 제8조)
- 바. 노인상담센터의 관리 수탁의 의무,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(안 제9조 ~ 제10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노인복지법」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
 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 - 다. 합 의 : 합의되었음
 - 라. 기 타
 - (1) 입법예고(2013.4.25~ 5.15) 결과 : 의견없음
 - (2) 규제심사 : 대상사무 없음
 - (3) 부패영향평가 : 의견반영(제9조제1항제4호 중)
- (원 안) 보조금은 반드시 상담센터의 운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.

(반영안) 보조금은 상담센터의 설치 및 운영 목적에 맞도록
사용하여야 한다.

(4) 성별영향평가 : 의견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영등포구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에게 각종 상담, 교육, 서비스 연계를 제공하여 소외·고독감 등으로 인한 자살, 세대간의 갈등, 가족의 분열, 노인학대 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상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명칭 및 설치) ① 명칭은 「영등포구 노인상담센터」(이하 “상담센터”라 한다)로 한다.

② 상담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

제3조(기능) 상담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각종 상담 및 서비스 연계
2. 노인 학대, 자살예방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운영
3.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
4. 지역 내 노인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 사업
5. 노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
6. 그 밖에 “상담센터”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

제4조(시설) 상담센터에는 제3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.

제5조(인력) ① 상담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,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, 예산 부

족 등으로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비상근 또는 겸직으로 할 수 있다.

② 센터장을 제외한 상담센터 종사자는 「노인복지법 시행령」 제12조에 따라 자격을 갖춘 인력을 둘 수 있다.

제6조(자원봉사) ① 상담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.

② 자원봉사자는 상담센터 운영의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,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.

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7조(강사) ① 상담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.

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8조(운영) ① 상담센터는 구청장이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상담센터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이나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② 상담센터 운영을 민간위탁 할 경우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영등포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」에 따른다.

제9조(수탁자의 의무) ① 상담센터 운영을 위탁받은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.

1.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
2. 수탁자가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3. 수탁자는 관계 법령, 조례 및 위탁 계약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.
4. 보조금은 상담센터의 설치 및 운영 목적에 맞도록 사용하여야 한다.

제10조 (지도·감독)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상담센터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관련 서류를 조사하고 수시 지도·점검하게 할 수 있다.
② 수탁자는 지도 및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, 구청장은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제11조 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 중인 상담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 및 운영된 것으로 본다.